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해식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검찰청법」 폐지와 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10항 등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최 기 도)